

# 힐스테이트 연제

## 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련 안내문

### ▶ 공급개요 및 일정

- 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 연제동 226번지 일원
- 규모 : 지하 1층, 지상14~25층, 17개동, 총 1,196세대

### ▶ 일정 계획(예정)

구 분	일 자	참고사항
• 입주자모집공고	2017. 10. 27(금)	<a href="http://www.hillstate.co.kr/">http://www.hillstate.co.kr/</a>
• 모델하우스개관	2017. 10. 27(금)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1번지
• 접수일자	2017. 11. 01(수)	건본주택 방문접수 (인터넷 청약접수 불가)
• 특별공급 당첨자발표	2017. 11. 01(수)	당사 건본주택에 게재

※ 위 일정은 업무 추진중에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는 특별공급 당첨자만을 선정하며, 당첨자에 대한 동·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 공급 당첨자와 함께 입주자선정프로그램에 의해 추첨하여 결정함. (일반 공급 당첨자 발표일에 특별공급 동·호수 배정 결과 발표)

### ■ 특별공급 공통사항[기관추천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등)]

-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40조, 제41조, 제46조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노부모부양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1회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음.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 함은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함
- ①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 ②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③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에 한정한다)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④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주택공급신청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가 청약시 무주택세대구성원과 주택공급신청자는 동일함) ※ 1세대내 1인만 신청가능
무주택여부확인대상자	-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상에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 공통사항

- 1세대내 1인만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됨.

■ 이 안내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함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의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7.10.27.예정) 현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추어야 함.

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통장 가입요건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지역별 / 면적별 기준에 따라 청약할 수 있는 예치금액 이상인 자(전용면적 85㎡ 이하만 해당) ③ 청약저축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형의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 (단,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청약자격을 갖춘 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통장을 변경하여야 함)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장애인 · 국가유공자 가입요건 제외대상)

• **당첨자 선정방법**

- 일반 특별공급(기관추천) 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청약하여야 함.[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 배정) 및 계약불가]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전산관리지정기관(금융결제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함 (미신청·미계약 동·호 발생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대상기준 및 청약경쟁율이 1:1을 초과할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은 추첨에 의함.
- 타입별 공급수량 이상으로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건설지역 거주 신청자가 타지역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타지역 거주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당첨자 선정(공고) 유의사항**

-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음.
- 사업주체는 당첨자만을 선정하며, 동·호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 입주자 선정프로그램으로 배정함 (동·호 배정 결과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공고할 예정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5항의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업무중 동·호수 배정업무를 추첨기관(전산관리지정기관)에서 수행하므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일시와 동·호수 배정 결과 발표 일시가 상이함.
- 특별공급의 추첨순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40조에 해당하는 다자녀 특별공급, 제41조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46조에 해당하는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 순으로 추첨하나, 추첨일의 상황에 따라 사업주체에서 임의로 추첨 순서를 변경 할 수 있음.

• **특별공급 유의사항**

- 1세대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당첨자 명단관리, 계약체결불가, 입주자 저축 효력 상실 및 재사용 불가) 단, 노부모부양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적용됨.
-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함.
- 본인이 특별공급간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됨.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특별공급 신청 미달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청약신청시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부적격된 특별공급주택 및 미계약 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주택은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됨.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전산검색결과에 따른 세대원의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 노부모부양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신청자, 배우자, 세대원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또는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계약 해제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제외)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음.

##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 시

### ▶ 신청시 구비서류

서류 유형		해당 서류	발급 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①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본주택 비치양식 사용</li> <li>· 필요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li> </ul>
○		②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포함하여 발급요망</li> </ul>
○		③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도: 주택공급신청용</li> </ul>
○		④ 주민등록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 확인 가능한 신분증</li> </ul>
○		⑤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요망</li> <li>·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시·도 지역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이 안될 경우 제출</li> </ul>
○		⑥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⑥,⑦ 제출 (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li> <li>· 배우자가 없는 경우 ⑦ 제출</li> </ul>
○		⑦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⑧ 청약통장가입(순위)확인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결제원 청약홈페이지 및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발급</li> <li>· 철거민, 국가유공자 및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장애인 제외(그 외 특별공급 대상자는 제출)</li> </ul>
○		⑨ 제3자 대리인 서류	본인 / 대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 존·비속 포함)로 아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li>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신청위임용)</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건본주택 비치)</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대리 신청자의 도장</li> </ul>
○		① 해당기관 추천서 또는 인정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의 경우 지자체장이 발행한 장애인 증명서만 인정함(복지카드 등 기타 서류 불가)</li> <li>· 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li> </ul>

## ○신청 유형별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비서류	비고
본인 신청시	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②인감도장	신청자 구비
배우자 신청시	① 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② 신청자 인감도장 ③ 배우자 관계증명서류(주민등록표등본 or 가족관계 증명서)	
제 3자 신청시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자)	① 위임장(신청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신청장소 비치
	② 신청자 인감증명서(용도:아파트청약신청 위임용) ③ 신청자 인감도장 ④ 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신청자 구비

## ▶ 유의사항

-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가 신청일[2017. 11. 01(수)예정]에 분양사무실(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1번지 힐스테이트연제 모델하우스)에서 신청 접수하지 않을 경우 대상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됩니다.
- 신청한 주택형의동호수배정은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금융결제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합니다.(미신청·미계약동호 발생시에도 동호변경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될 경우 2건 모두 계약체결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합니다.
-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2017.10.27(금) 공고예정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어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형별 세부사항 등은 분양사무실, 홍보물을 통하여 다시한번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2017. 10. 27(금)예정] 현재 무주택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이 아닌 자는 접수 불가하며 당첨자 명단 관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적격대상자 명단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주광역시 북구 연제동 226번지 '힐스테이트 연제' 특별공급 배정세대

▶ 해당세대수

대상세대	82	84A	84B
19	4	14	1

■ 힐스테이트 연제 특별공급 추천 양식

추천기관 :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특별공급 대상 : 기관추천 특별공급

▶ 추천명단

타입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계				